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8-19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
판 결

사 건	2023가단95966 부당이득금
원 고	주식회사 A(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)
	소송대리인 변호사 노◯◯
피 고	◯◯도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◯◯◯◯◯◯◯◯◯
	담당 변호사 이◯◯
변 론 종 결	2024. 5. 1.
판 결 선 고	2024. 5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18,511,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12. 7.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8-19

1. 사실관계

갑 제1호증, 제2호증, 제3호증, 제5호증, 제8호증, 제9호증의 1, 2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
가. 원고는 2016. 9. 15. ○○시 ○○구 C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.

1) 원고와 D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E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.

2)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건축비 등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하고, D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확인한다.

3) 이 사건 건물 완성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D에게 명의신탁하여 공동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다. D은 원고가 신탁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다.

나. 원고와 D은 공동 건축주로서 2016. 11. 4.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.

다. 이 사건 건물 완성 후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(집합건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마쳐졌으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).

라. 원고는 2019년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(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76873), 조정절차로 이행되어 2020. 3. 23. 'D은 원고에게 2020. 4. 30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8-19

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. 12. 10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.'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조정'이라 한다).

마.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치게 될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118,511,590원(이하 '이 사건 취득세'라 한다)을 신고하고 2021. 12. 6.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.

바. 원고는 2023. 5. 17.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는 등기 신청을 불허하였다.

사. 원고와 D은 2023. 6. 8.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. 5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2. 원고의 주장

관할 등기소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등기 신청을 불허한 이상,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등 118,511,5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3. 판단

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,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,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8-19

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).

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관할 등기소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등기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고의 등기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.

설령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, 이러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등기소가 등기 신청을 거부한 법령상의 근거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,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,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8-19

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이○○